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54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 의 의 원 : 이성혁 의원

찬 성 의 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22조
 - 「교육기본법」 제5조,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과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추진방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오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 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제9조(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 전문가 및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지원 및 육성

제18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학교 운영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관리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